

또 터진 한빛원전 비리…지역민 불안감 확산

납품업체에 수천만원 받은 팀장·과장 2명 체포

한수원 자구책 마련 무색…부품 전면 안전점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한빛(영광)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 보안시설인데도 원전 부품 납품 비리가 발생,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급기야 한빛원전 간부 직원이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이들을 현지에서 체포, 부산으로 압송하는 한편, 이를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을 벌여

서다.

◇부품 납품 비리, 뇌물, 금품 수수 등 '검은 뒷거래'…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빛원전 A팀장과 B과장을 체포했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1월 납품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직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시험설계서 위조 부품이 수백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품 납품과 관련된 장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부품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 챙긴 횡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측은 월성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1월 납품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직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시험설계서 위조 부품이 수백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1일 P사에서 금품 수수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청구(59) 한수원 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과거 월성원전에서 이 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부·차장 등 중간 간부 4명을 불러들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 바 있다.

◇'고구마 줄기' 원전 불안감 확산=한수원은 지난해 원전 비리 문제가 잇따르면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원전 납품 부품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검사를 벌였다. 또 자재 구매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하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로 그동안의 점검·자체 감사가 '생색내기성'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민간 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빛민간감시센터 관계자는 "고구마 줄기처럼 뒷거래는 비리로 주민들은 지쳐간다"며 "한빛원전이 안전·신뢰성을 흥보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불신·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5·18 명예훼손 2명 불기소 왜곡대책위 반발 항고장 제출키로

5·18역사왜곡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6월 7일 고소한 종편 출연자 4명 중 이주성, 임천용 등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전 부품 납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한 종편에 출연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서 발생했다고 증거도 없이 빌어먹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고, 5·18 당시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역사왜곡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인터넷 및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명예훼손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의 형벌을 행사해 건전한 사회적·국가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중기자 golee@kwangju.co.kr



5·18민중항쟁 34주년 행사위원회는 8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에 앞서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재성 판사, 본인 과오 덮고 여론 호도 부적절"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 비판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선 교수가 한 언론을 통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전횡을 막으려 그의 역공으로 '비리 판사'로 낙인 찍혔다"고 밝힌 것과 관련, "초가삼간이 타고 있는데 본인의 가재도구만 쟁기는 것과 같다"면서 "선재성부장판사는 선의의 피해자를 자임하며 본인의 과오를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예비후보는 "선부장판사는 이유야 어떻든 변호인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위법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친형과 운전기사, 친구를 자신이 법정판리하는 기업의 관리인으로 앓힌 사실이 드러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행위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A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판리 기업 관리인 B 변호사에게 A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혐의로 기소됐던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고위 법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은 그 무슨 말로도 옹호할 수 없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음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관찰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맡기도록 했다. 2심에서는 선부장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A 변호사는 법정판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B 변호사에게 52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후 선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형을 확정했고, 강 변호사와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집 운영권 매매 또 무죄 판결

광주지법 "시설장 임명 대가 돈받았어도 배임수재 적용안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시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희 판사는 8일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대표이사 선임 대가로 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26일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대표이사 선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3명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고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법인 기본 재산의 침해가 없고 양수인측이 범인

인 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법인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날 2009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이사 및 시설장 임명 대가 명목으로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26일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대표이사 선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3명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고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법인 기본 재산의 침해가 없고 양수인측이 범인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법원 경매부동산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소재지 및 면적 [m ²]	용도		
[아파트]					
2013타경 30330	1	광산구 월계동 763-2 채단8차리아아파트 802동 1층 59.90㎡	아파트	92,000,000 92,000,000	
2013타경 31111	1	서구 풍정동 1130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1층 1004호 134.8260㎡	아파트	298,000,000 298,000,000	
2013타경 31791	1	서구 양동 60-2 1동 11층 1105호 67.47㎡	아파트	96,000,000 96,000,000	
2013타경 32367	1	복구 일곡로 100, 104동 2층 201호 「일곡동 대아파트」 59.360㎡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관리비미납
[단독주택, 단기구주주택]					
2013타경 21947	1	당양군 무정면 안평리 177-284㎡ 대지	단독주택	16,039,500 16,039,500	일괄매각, 목록2, 및 제3자와의 권리 분쟁
2013타경 28504	1	복구 우신동 192-2 99㎡ 대지	단독주택	69,914,080 69,914,080	일괄매각, 제3자와의 권리 분쟁
2013타경 32022	1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404-1 446㎡	단독주택	50,315,500 50,315,500	일괄매각, 제3자와의 권리 분쟁
2013타경 32176	1	영광군 흥농동 철곡로 61 1층 46.8㎡	단독주택	18,978,000 18,978,000	일괄매각, 제3자와의 권리 분쟁
[상가/오피스텔, 균린시설]					
2013타경 19067	1	동구 대인동 32-19 780.2㎡ 대지	상가/오피스텔, 균린시설	2,470,120,980 2,470,120,980	일괄매각

● 공고된 부동산의 양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 매각 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예수신청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대법원 출판부에서 공지하는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

* 예수신청금은 원금과 이자 및 예수신청금의 10%를 제외하고 원금의 50%를 환수한다.